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37

발의연월일: 2021. 3. 17.

발 의 자 : 이 용 · 정희용 · 김도읍

김태흠 · 김정재 · 김성원

신원식 · 지성호 · 유의동

배준영 · 윤두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 년 6월부터 각 지역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 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음.

그런데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전단 중 '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'를 '지방체육회'로, '보조할 수 있다'를 '지원하여야 한다'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|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|
| 일부개정법률 | 일부개정법률 |
| 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| 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|
| 에 대한 보조) ①·② (생 략) | 에 대한 보조) ①・②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③ 지방자치단체는 <u>대한체육회,</u> | 3 |
|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| <u> 지방체육회</u> |
|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| |
| 범위에서 운영비를 <u>보조할 수</u> | 지원하여야 |
| <u>있다</u> 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| 한다 |
|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| |